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보고서

2021. 4. 16.

행정재경위원회

의안 번호	385
----------	-----

##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 4. 2. (이향숙 의원 대표발의)
- 나. 상정의결
- 제29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 (2021. 4. 16.)  
“원안가결”

## 2. 제안설명 요지(이향숙 의원)

- 가. 제안이유
-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 급감을 견디지 못하고 폐업을 하는 소상공인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인한 강남구 내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지원금 지급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재난시 폐업한 소상공인 지원규정 별도 신설에 따라 경영안정 지원에 대한 용어의 정의에서 “폐업” 삭제(안 제2조 제3호)
  -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적용범위 수정(안 제3조 제2항)
  - 재난 시 폐업한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지원 근거 마련(안 제6조2)
- 다. 참고사항
- 관계법규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조치 : 논의 필요
- 입법예고 : 해당없음

###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구경남)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sup>1)</sup>에서는 중소기업부장관은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근거가 있고 「소상공인기본법」은 2021.2.5.부터 시행되어 제29조<sup>2)</sup>에 따른 재난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시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그 시책의 하나로 재난시 소상공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임.

- 우리 구에서는 소상공인에게 **재난관리기금**을 통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위기에 직면한 우리 구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료를 지출하는 자영업자에 대하여 임차료를 지원한 바 있음.

○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정의)제3호에서는 ‘경영안정 지원’의 정의에서 ‘폐업’을 삭제하려는 바 이는 제6조의2 신설규정을 마련하여 폐업은 재난시에만 지원하려는 의도로 보임.

- 안 제3조(적용범위)제2항의 개정규정은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 안 제6조의2(재난 시 폐업한 소상공인 지원 등)의 신설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sup>3)</sup>에 따른 재난 시에는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민행동지

####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이하 “폐업 소상공인”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재창업 지원
2. 취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 알선
3. 그 밖에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2) 소상공인기본법 [시행 2021. 2. 5.] [법률 제16954호, 2020. 2. 4., 제정]

제29조(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침, 행정조치 등을 이행한 소상공인이 폐업한 경우 **피해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임. 다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지원의 형평성과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고 보여짐. 후단(이 경우)에서는 사업장이 강남구에 소재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바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의도로 이해됨. 피해지원금의 지원기준과 절차,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의 특성을 반영한 규정으로 보임.

- 안 부칙 제2조(폐업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적용례)에서 제3조제2항, 제6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작 시점인 2020년 3월 22일 이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수익적인 성격의 소급입법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침해적인 소급입법과 달리 입법의 목적, 수혜자의 상황, 예산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하겠음. 다만, 수혜 여부에 따라 소상공인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고 보여짐.

---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향숙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85
----------	-----

발의연월일 : 2021. 4. 2.

발 의 자 : 이향숙·이재민·김영권·

복진경·김진홍(이상5인)

### 1. 제안이유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 급감을 견디지 못하고 폐업을 하는 소상공인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인한 강남구 내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지원금 지급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재난시 폐업한 소상공인 지원규정 별도 신설에 따라 경영안정 지원에 대한 용어의 정의에서 “폐업” 삭제(안 제2조 제3호)
- 나.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적용범위 수정(안 제3조 제2항)
- 다. 재난 시 폐업한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지원 근거 마련(안 제6조2)

###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규 : 해당 없음.
- 나. 예산조치 : 논의 필요
- 다. 입법예고 : 해당 없음.

## 서울특별시 강남구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경영개선, 폐업”을 “경영개선”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소상공인 및 사업자등록”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재난 시 폐업한 소상공인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시에는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민행동지침, 행정조치 등을 이행한 소상공인이 폐업한 경우 피해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폐업한 소상공인은 종전 사업장이 강남구에 소재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절차, 지원금액 등은 피해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업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22일 이후 폐업신고한 소상공인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2. (생 략)</p> <p>3. “경영안정 지원”이란 소상공인의 창업, <u>경영개선, 폐업</u>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말한다.</p> <p>4. (생 략)</p> <p>제3조(적용범위) ① (생 략)</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u>사업자등록</u>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p> <p><u>&lt;신 설&gt;</u></p>	<p>제2조(정의) ----- -----.</p> <p>1.·2. (현행과 같음)</p> <p>3. ----- ----- <u>경영개선</u> ----- ----- --.</p> <p>4. (현행과 같음)</p> <p>제3조(적용범위)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폐업한 소상공인 및 사업자등록</u>----- -----.</p> <p>제6조의2(재난 시 폐업한 소상공인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시에는 <u>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민행동지침, 행정조치 등을 이행한 소상공인이 폐업한 경우 피해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폐업한 소상공인은 종전 사업장이 강남구에 소재한 경우로 한정한다.</u></p> <p>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절</p>

차, 지원금액 등은 피해상황, 재  
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